

[별표 3] <개정 2010.6.30>

자동차의 종류(제4조 관련)

1.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

종 류	정 의	규 모
경 자 동 차	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엔진배기량 800cc 미만
승용자동차	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
소형화물 자 동 차	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
중량자동차	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총중량 3톤 이상
이륜자동차	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.5톤 미만

- 참고: 1.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왜건(WAGON) 등을 포함한다.
 2.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(JEEP)·코우치(COACH) 및 밴(VAN) 등을 포함한다.
 3.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 4.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, 경자동차·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.
 5.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따르되, 차량 총중량이 1.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.

2.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

종 류	정 의	규 모
경자동차	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엔진배기량 800cc 미만

승용자동차	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승용1	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
		승용2	엔진배기량 800cc 이상,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
		승용3	엔진배기량 800cc 이상,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.5톤 이하
		승용4	엔진배기량 800cc 이상,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.5톤 초과
화물자동차	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화물1	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
		화물2	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.5톤 이하
		화물3	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.5톤 초과
이륜자동차	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.5톤 미만	

참고: 1. 승용자동차에는 지프(JEEP)·왜건(WAGON)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.

2. 화물자동차에는 밴(VAN)을 포함한다.

3.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4. 이륜자동차에는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, 빈 차 중량이 0.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.

5.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의하되, 차량 총중량이 1.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.

3.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

종 류	정 의	규 모
경자동차	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	엔진배기량 1,000cc 미만

	것		
승 용 자동차	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것	소형	엔진배기량 1,0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
		중형	엔진배기량 1,000cc 이상,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량 2톤 이하
		중대형	엔진배기량 1,000cc 이상,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량 2톤 초과 3.5톤 이하
		대형	엔진배기량 1,000cc 이상,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량 3.5톤 초과
화 물 자동차	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것	소형	엔진배기량 1,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
		중형	엔진배기량 1,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.5톤 이하
		대형	엔진배기량 1,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.5톤 초과
이 룰 자동차	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	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<u>빈 차</u> 중 량 0.5톤 미만	

- 참고: 1. 승용자동차에는 지프(JEEP)·왜건(WAGON)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.
2. 화물자동차에는 밴(VAN)을 포함한다.
3.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
다.
4.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
의 최고속도 50km/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, 빈 차 중량이
0.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.
5.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
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, 차량총중량이 1.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
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.